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84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김선교·구자근·김상훈

최수진 • 이철규 • 김석기

김위상 · 김정재 · 박정하

서일준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(이하 "영유 아동반 자동차"라 한다)

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중 "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"를 ",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"로 한다.

제12조의3제3항 중 "및 환경친화적 자동차"를 ",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

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야 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주 제6조(주차장설비기준 등) ① --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(제2호 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 전시설을 포함한다)을 일정 비 율 이상 정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 <신 설> 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 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(이하 "영유아동반 자 동차"라 한다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 법률 제19983호 주차장법 일부개 정법률 정법률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 등) ① -----

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지정
- ② · ③ (생 략)
- 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 저 른 노외주차장) ①·② (생 략)
 -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
, 승용차공동이용
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∥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
른 노외주차장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, 환경친화적
자동차 및 영유아동반 자동차-